



사업자 여러분께 청구서 보존 방식이 바뀝니다 !

무엇이 바뀌나요 ?

~**2023년9월30일** (구분 기재 청구서 등 보존방식(소비세가 여러개(8% ,10%)있는 경우,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))

구입 세액의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, '구분 기재 청구서' 의 보관이 필요합니다. 누구나 구분 기재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2023년10월1일~ (적격 청구서 등 보존방식 (인보이스(적격증빙) 제도))

구입 세액의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, '적격 청구서 (인보이스)' 의 보존이 필요합니다. '적격 청구서 (소비세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청구서)' 를 작성 할 수 있는 곳은 세무서장의 등록을 받은 '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' 에 한합니다.

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?

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말지는 **사업자의 임의 사항** 입니다. 면세 사업자 (과세 매상고가 1000만엔 이하의 사업자) 인 분이라도,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서 등록할지 검토 합니다. 등록검토 시, 다음 항목을 참고하십시오.

매상처 (손님) 이 적격 청구서를 필요로 하나요?



- 매상처가 일반 소비자나 면세 사업자 등인 경우, 적격 청구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
- 매상처가 과세 사업자인 경우, 원칙적으로 구입 세액 공제를 위해 귀사가 교부하는 적격 청구서가 필요합니다.
- 매상처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, 매상처에 직접 상담 하는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등록을 한 경우, 어떻게 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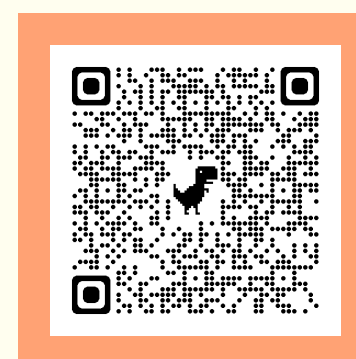


- 매상처가 인보이스를 요구한 경우, 적격 청구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- 면세 사업자가 등록한 경우, 과세사업자로서 소비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.

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, 어떻게 되나요?



- 매상처가 인보이스를 요구한 경우, 적격 청구서를 교부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
- 적격청구서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서 등을 교부 가능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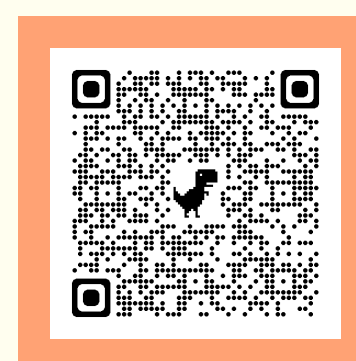
자세한 내용은
국세청 홈페이지에서
볼 수 있습니다!
(일본어)

<https://www.nta.go.jp/taxes/shiraberu/zeimokubetsu/shohi/keigenzeiritsu/pdf/0022009-057.pdf>

등록방법

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.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세무서에 「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신청서」 를 제출합니다.
※ e-Tax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세무서 심사를 거쳐 적격청구서 발급사업자로 등록된 경우,
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'등록통지서'가 송부됩니다.
※통지되는 등록번호 등은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.



자세한 내용은
국세청 홈페이지에서
볼 수 있습니다!
(일본어)

https://www.nta.go.jp/taxes/shiraberu/zeimokubetsu/shohi/keigenzeiritsu/invoice_shinei.htm

등록 기한이 있나요 ?

등록기한은 없으나 2023년 10월 1일부터 적격청구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**2023년 9월 30일**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. 신청 후, 등록통지가 도착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등록을 하실 분은 빨리 신청해 주세요.

이 리플릿은 「국세청 인보이스 제도 특설 사이트」 의 정보를 기초로 작성했습니다.

세금 부담 경감 등의 '경과 조치' 와 사례는 2장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인보이스 발행 사업자가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 '20% 특례'

인보이스 제도를 계기로 면세 사업자에서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과세 사업자가 된 분에 대해서는, 구입 세액 공제의 금액을 '특별 공제 세액'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특례 개요 : 매출과 관련된 소비세액에서 매출세액의 80%를 공제하고 납부세액을 계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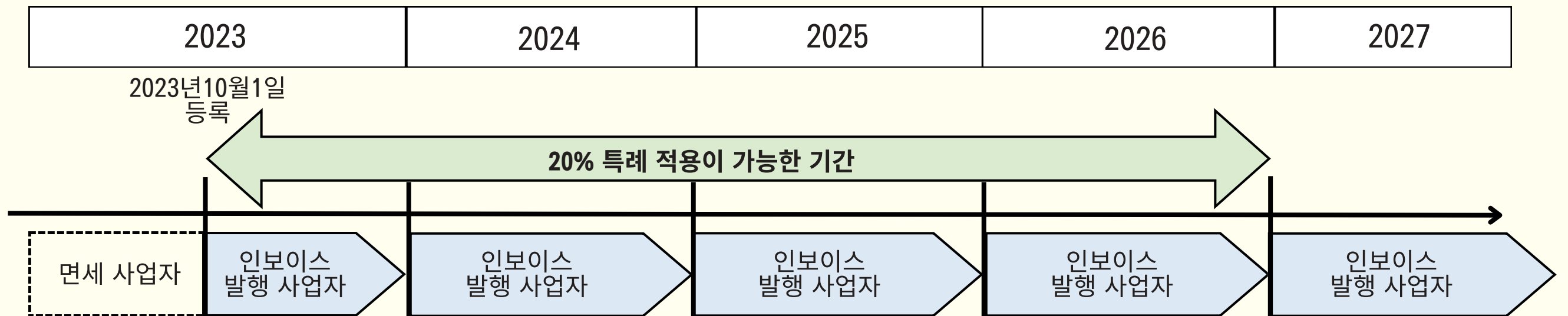
- ※ 구입 세액의 실액 계산 불필요
- ※ 업종에 관계없이 매상세액에 일률적으로 20% 납부
- ※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음



자세한 내용은
국세청 홈페이지에서
볼 수 있습니다!
(일본어)

<https://www.nta.go.jp/publication/pamph/shohi/kaisei/202304/01.htm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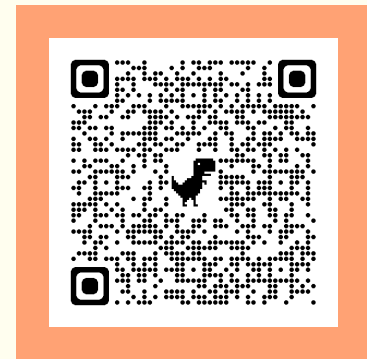
특례 기간 : 2023년10월 1일부터 2026년 9월30일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각 과세기간



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의 과세 구입에 관한 경과조치

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이외의 사람(면세 사업자나 소비자 등)이 교부한 청구서(적격 청구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)의 보존으로는 원칙적으로 구입 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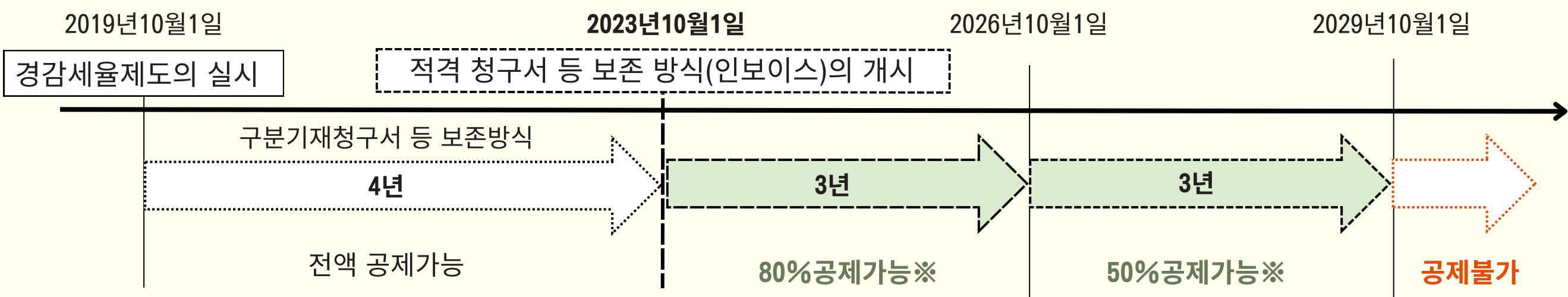
다만, 제도 개시 6년간은, 면세 사업자 등이 교부한 청구서라도, 구입 세액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구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

자세한 내용은
국세청 홈페이지에서
볼 수 있습니다!
(일본어)

<https://www.nta.go.jp/taxes/shiraberu/zeimokubetsu/shohi/keigenzeiritsu/pdf/qa/01-15.pdf>

개요 · 기간 :



※ 이 경과조치에 의한 구입세액공제 적용 시, 면세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구분기재청구서와 동일한 사항이 기재된 청구서 등의 보존과 이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장부의 보존이 필요합니다.

사례

※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입니다. 등록할지 말지는 사업자의 임의 사항입니다.



A씨 통역사 면세사업자

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주요 고객이 큰 기업이나 행정기관 등이므로 적격 청구서 교부가 요구됩니다. 고객님과 상의하여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.

B씨 가정교사 면세사업자

개인 사업주로서 영어 과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주 고객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일반 소비자로 적격 청구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

